

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

판 결

사 건 2024고단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), 교통사고처리특례
법위반(치상)

피 고 인 A

검 사 박준범(기소), 박효정(공판)

변 호 인 변호사 장지근

판 결 선 고 2024. 10. 17.

주 문

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(차량번호 1 생략)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.

피고인은 2023. 9. 30. 14: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1081에 있는 합천생태공원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.

그곳은 공원 주차장으로 어린이들이 근처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안전상 주의의무가 있었다.



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B(남, 3세), 피해자 C(여, 5세)을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여,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:0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,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F, G,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

1.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

1.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, 교통사고보고(실황조사서)

1. 입건전조사보고서(증거목록 순번 11, 13번)

1. 사망진단서, 검시조서, 진단서

1. 사고현장사진, 112신고사건처리표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

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, 형법 제268조(업무상 과실치사의 점,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)

1. 상상적 경합

형법 제40조, 제50조[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)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]

1. 형의 선택



금고형 선택

양형의 이유

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의 동기, 수단과 결과,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,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,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.

- 유리한 정상 :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. 피해자 B 유족과 합의하였다.
- 불리한 정상 :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B(남, 3세)은 사망하고, 피해자 C(여, 5세)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분의 골절 등을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. 피해자 C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.

판사 김여경 _____